

#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0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 2024. 2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(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)에 의거 전통시장 내 물류창고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전통시장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, 제65조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
-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, 제31조

- 추진 필요성

- 평창전통시장과 진부전통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물류창고를 각 전통시장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함.
- 이를 위해, 상인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운영으로 고객편의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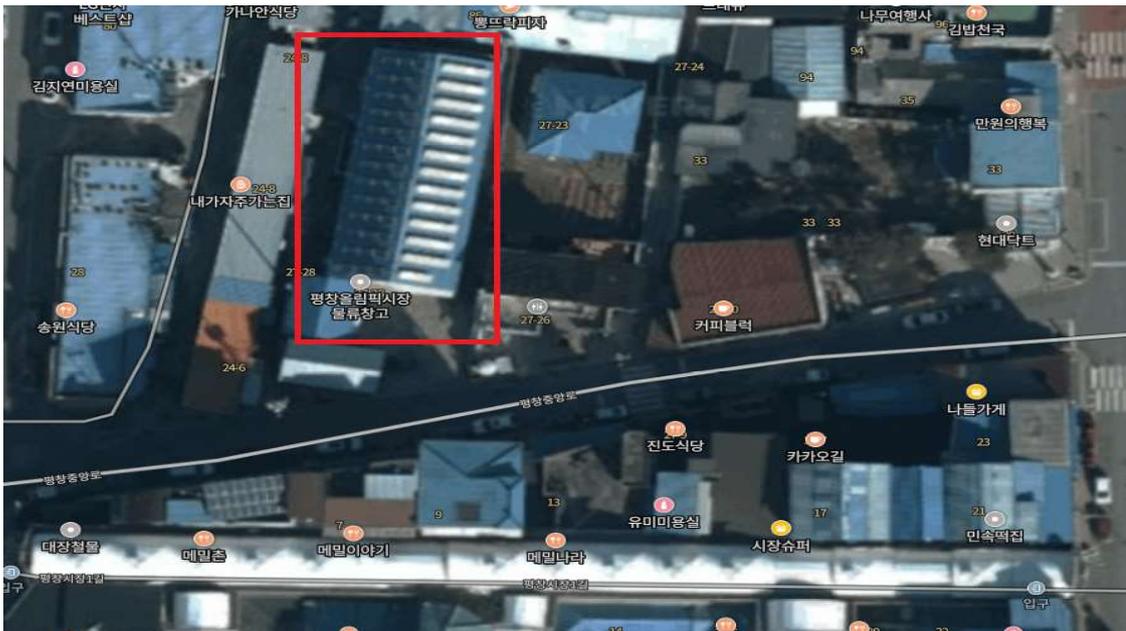
- 위탁범위 : 전통시장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전반
- 사무내용
  - 물류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 등

- 평창군 소유의 재산 및 장비(비품)의 사용과 유지관리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이 정하는 사업
- 기타 시설운영 등의 내용은 위(수)탁 협약서에 정함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### 1.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

- 위 치 : 평창군 평창읍 하리 137-16 외 2필지,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
- 규 모 : 대지면적 851m<sup>2</sup>
  - 물류창고(저온저장고) : 360m<sup>2</sup>(저온저장고6, 냉동고1 등)
  - 부속창고(절임배추설비) : 44.10m<sup>2</sup>
- 현수탁자 : 평창전통시장상인회(회장 김봉규)
- 위 치 도



### 2.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

- 위 치 :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59,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
- 규 모 : 대지면적 1,422m<sup>2</sup>
  - 물류창고(물류보관) : 339.6m<sup>2</sup>(저온저장고3, 냉동고1 등)
  - 물류창고(보관시설) : 55.8m<sup>2</sup>
- 현수탁자 : 진부전통시장상인회(회장 송경수)

## ○ 위 치 도



### 마. 관리위탁기간

○ (평창) 2024. 04. 21. ~ 2029. 04. 20.(5년간)

○ (진부) 2024. 03. 18. ~ 2029. 03. 17.(5년간)

※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30조제1호에 따라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시장별 전통시장상인회와의 위·수탁 협약 체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0조,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,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, 제31조에 따라 군수는 상인회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음.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수입(운영비) : 24,400천원

| 이용구분   |           | 사용단가  | 수입     | 비고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역     | 규모(개수)/방식 |       |        |        |
| 평창전통시장 | 총계        |       | 13,800 | 단위: 천원 |
|        | 10평(3개)   | 2,600 | 7,800  |        |
|        | 5평(4개)    | 1,300 | 5,200  |        |
|        | 창고(1개)    | 800   | 800    |        |
| 진부전통시장 | 총계        |       | 10,600 |        |
|        | 장기임대      | 1,000 | 10,000 |        |
|        | 단기임대      | 일 20  | 600    |        |

※ 실 사용하는 상인회원에게 공과금, 소규모 수리비 등 운영비를 사용료로 받아 물류창고 운영

○ 소요액 : 23,782천원

- 전기료 등 공과금 및 공유재산 사용료 : 20,782천원

※ (평창읍) 12,167천원, (진부면) 8,615천원

- 소규모 수리비 : 3,000천원

## 아.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전통시장의 물류창고는 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,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하는 시설들임.

이를 사유로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설립하였으나, 상인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한 시설로, 시장의 실정에 능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이 적정함.

○ 각 전통시장 별 상인회에서 운영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,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시장이용객과 상인들의 요구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.

○ 향후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자. 그 밖에 관리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# 1. 운영현황

#### ○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

- 위탁운영현황 : 2021. 4. 21. ~ 2024. 4. 20.

※ 위탁운영단체 : 평창전통시장상인회(회장 : 김봉규)

#### ○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

- 위탁운영현황 : 2021. 3. 18. ~ 2024. 3. 17.

※ 위탁운영단체 : 진부전통시장상인회(회장 : 송경수)

### 2. 향후계획

- 위탁기관 협약체결 : 2024. 3. 17. 까지

# 관계법령 발취

## 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,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, 절차 및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(상인회)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

## 2.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9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되,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
2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
3.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
4.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

## 3.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제4조(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)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, 화장실, 비가림시설,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31조(위탁관리) ① 군수는 시장,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

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, 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